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4
----------	-----

제안년월일 : 2002년 6월 24일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중 별표(경기도조례 제3184호)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3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 동 기구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운영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내,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6인이상 9인 이내로 함. (제2조)
- 상임위원회 소관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 (제3조제2항제3호다목)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5인 이상 7인 이내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이상 9인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이상 9인 이내

제3조의 제2항제3호다목중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 1. 운영위원회 5명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같음) 1. 운영위원회 5인 이상 7인 이내 2. 총무보사위원회 6인 이상 9인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6인 이상 9인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그 소관)①(생략) ②(생략) 1~2 (생략) 3. 산업건설위원회 가~나 (생략) 다. 농업기술센터, <u>상수도관리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그 소관)①(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1~2 (현행과같음) 3. 산업건설위원회 가~나 (현행과같음) 다. 농업기술센터, <u>상수도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